

명예직원 운영규칙

2024. 6. 27
[규칙]
제399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경기연구원(이하 ‘연구원’이라 한다) 명예직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 따른 ‘명예직원’이란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있는 직원이 연구원을 정년 퇴직 한 후에도 전문성과 경험 등을 활용하여 연구·행정 자문, 사회활동 등에 기여하기 위해 위촉된 자를 말하며, 호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3조(자격) 명예직원은 연구원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자로서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이어야 한다.

제4조(위촉절차) ① 명예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심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.

1. 부서장(또는 상위 직급자) 추천서
2. 인사기록카드(상별 내역 포함)
3. 연구 또는 업무 수행 목록
4. 기타 연구원 기여사항 등

② 제1항 제1호의 추천서는 [별지 제1호 서식]에 의한다.

제5조(위촉해지) 원장은 명예직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직원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타 기관에 상근(주 3회 또는 주 20시간 이상 근무)으로 취업할 때
2.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연구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3. 본인이 원할 경우
4. 기타 사유로 명예직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연구원에서 판단할 경우

제6조(예우 등) ① 명예직원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따르는 고용계약 관계로 보지 아니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원장은 명예직원에게 대해 명함, 이메일 및 기타 편의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.

부칙(2024.6.27.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